

# 2020년 의료질평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CONTENTS

1. '20년 의료질평가 주요내용

2. 평가지표 세부기준

3. 세부 평가방법

4. 자료 제출

5. '21년 평가 안내

6. 향후 평가 일정





CHAPTER • 1

# '20년 의료질평가 주요내용

# '20년 평가 추진 방향

- 평가 대상기간 전 평가지표 사전 공개

구분	지표공개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간	수가산정
일정	'18.12.	'19.1.~12.	'20.6.~12.	'21.1.~12.

-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가치 중심으로 평가영역 개편

'19	영역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지표수	28		10	7	9	4

'20	영역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지표수	14	9	8	8	9	4

- 중복·실효성 낮은 지표 정비 및 통합

# '20년 의료질평가

---

- **평가 대상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 종합병원으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인 의료기관
- ✓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실적 포함

\* 자료제출 기간 : 2020.6.22.~7.13.

- **평가 대상기간**

- ✓ 진료실적 : 2019.1.1. ~ 12.31.
- ✓ 인력 및 시설 : 2019.12.31.
- ✓ 다른 평가기관 평가 활용 자료 : 해당 평가의 대상기간 적용

# '20년 의료질평가

- **평가 지표 : 6개 영역, 52개 평가지표**(시범지표 등 가중치 미 적용 지표 포함)
  - ✓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은 2019년 평가 결과 연속 적용
- **평가 영역 및 가중치**

평가영역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합계
지표수(개)		14	9*	8	8*	9	4	52
영역가중치(%)		37	18	20	11	8	6	100
지표 가중치 (%)	상	4.0~5.0	-	4.0	2.0	0.8~2.6	2.0	100
	중	약 2.7 (16/6)	약 2.4 (17/7)	2.0	1.5	약 0.3 (1/3)	1.0	
	하	1.0	1.0	-	1.0	0.2	-	

\* 시범지표 포함



## 평가지표 변경 내용

# 환자안전 영역 (1)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인프라	환자 진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인증 여부	의료기관 인증 여부	-
	적정수준의 의료 인력 확보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의사수	-
		입원환자당 <b>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비율</b>	입원환자당 <b>간호사수</b>	지표명 변경
		-	성인소아중환자실 병상당 의사수	삭제 (중환자실' 지표로 통합)
		-	성인소아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 횟수	삭제
안전성	의료관련 감염 발생 감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
		주사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가중치 변경(중→하)
		<b>감염관리체계 운영</b>	<b>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b>	산출 개선 및 명칭 변경 가중치 변경(하→중)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삭제

# 환자안전 영역 [2]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안전성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따른 환자안전 향상	중환자실	중환자실	가중치 변경 (중→상)
		<u>신생아중환자실</u>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	신설 및 통합 삭제 영역 이동 (공공성→환자안전)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u>음압공조 격리병상</u> 설치 여부	<u>음압격리병상</u> 설치 여부	지표명 변경
		<u>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u>	<u>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u> 여부	산출 개선 및 지표명 변경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산출 기준 추가
	<u>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u>	-	신설	
예방 가능한 재입원·재수술 감소	-	-	-	

# 의료질 영역

세부영역	목표	2020년 지표	2019년 지표	비고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다빈도외래질환에서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혈액투석	<i>혈액투석</i>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천식	-	
	중증 입원 질환에서 근거기반 의료서비스 제공	-	-	<b>유방암, 위암, <u>대장암</u>, 폐암</b>	삭제
		폐렴	폐렴	폐렴	-
		<b>관상동맥우회술</b>	<i>관상동맥수술</i>	<i>관상동맥수술</i>	지표명 변경
		<b>급성기뇌졸중</b>	<i>뇌졸중</i>	<i>뇌졸중</i>	지표명 변경
		<b>마취</b>	-	-	신설
주요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	-	-		
환자 중심성	환자중심의의료서비스제공을 통한 환자경험과 만족도 향상	<b>환자경험 (시범지표)</b>	-	시범지표 신설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상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 반영	<b>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b>	-	신설	
	환자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	-	-	

# 공공성 영역 (1)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의료이용의 형평성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질 보장	<u>의료급여 환자 비율</u>	<u>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u> <u>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u>	지표 통합 개선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영역이동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u>분만실 운영</u>	<u>분만실 운영 여부</u>	산출 개선 및 지표명 변경 가중치 변경 (중→상)
		-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	분만실 운영으로 통합 삭제
		<u>중환자실 운영 비율</u>	<u>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u> <u>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u>	지표 통합 및 영역 이동 (의료전달체계→공공성)

# 공공성 영역 [2]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의료이용의 형평성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산출 개선 및 영역 이동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
		<b>응급의료의 적정성</b>	<b>응급실 전담전문의당 내원환자수</b>	통합 및 지표명 변경 (‘응급의료의 적정성’ 으로 통합) 가중치 변경 (중~상→상)
			<b>응급실 전담간호사당 내원환자수</b>	
			<b>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b>	
			<b>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b>	
<b>비치료 재전원율</b>	‘응급의료의 적정성’ 으로 통합 영역 이동 (의료전달체계→공공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향상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정책 반응성 제고	정보 및 보고체계 구축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b>운영</b>	입원시 상병(POA) 보고체계 <b>운영 여부</b>	산출 개선 및 지표명 변경 영역 이동 (의료질과 환자안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b>참여</b>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b>참여 여부</b>	산출 개선 및 지표명 변경 영역 이동 (의료질과 환자안전→)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산출 개선 및 영역 이동 (의료질과 환자안전→)
		<b>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 (시범지표)</b>	-	신설
올바른 종별 기능 수행	중증질환 입원기능 정립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
		외래 경증질환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
	환자중심 의료연계 강화	<b>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b>	<b>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b>	산출 개선 및 지표명 변경 가중치 변경(중→상)

# 교육수련 영역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수련체계	체계적인 수련체계 구축	전공의 <b>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b>	전공의 <b>수련교육위원회</b>	지표명 변경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b>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b>	<b>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b>	지표명 변경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
		전공의 확보율	전공의 확보율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b>처리 이행여부</b>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b>처리규정</b>	지표명 변경
양질의 수련	양질의 수련을 통한 역량 있는 전문의 양성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
안전한 근무 환경	안전한 근무환경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수련환경 모니터링	수련환경 모니터링	산출 개선

# 연구개발 영역

세부영역	목표	2020년 평가지표	2019년 평가지표	비고
의료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양질의 연구개발 노력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
	우수한 연구성과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연구비 지출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

# '20년 지표 적용

---

- **적정성 평가 지표 결과 연속 적용**

-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과 연속 적용
- ✓ 중환자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폐렴은 2019년 평가 결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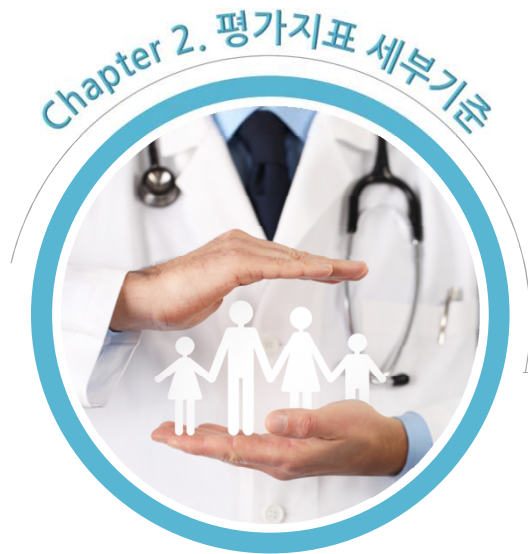
- **지표 상한선 설정**

- ✓ 해당 지표 :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 ✓ 전년도 지표값의 상위 2%를 상한선으로 설정('19년부터 적용)

CHAPTER • 2

# 평가지표 세부기준





# 1. 환자안전 영역

# I.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기관 인증 여부

가중치 상, 5.0%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기준시점 : '19.12.31.

# I.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입원환자당 의사수

가중치 상, 4.0%

- 산출식 = 
$$\frac{\text{전문의 수}}{\text{일평균 입원환자 수}}$$
- 전문의 수
  - ✓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수(한방, 치과 포함), '19.12.31. 기준시점
    - 상근 전문의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 6. 29.까지 수정 신고·처리 완료
- 일평균 입원환자 수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 의 일평균, 양입법 적용(입·퇴원일 모두 포함)
-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 $X_{max}$ )은 0.39 적용

# I.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가중치 상, 4.0%

- 산출식(총 4점) = ① 입원환자당 간호사수(50%) + ② 경력간호사 비율(50%)

① 입원환자당 간호사수(2점)

$$\frac{\text{일반병동 간호사 수}}{\text{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② 경력간호사 비율(2점)

$$\frac{\text{3년 이상 경력간호사 수}}{\text{입원병동 간호사 수}} \times 100$$

# I .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①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 산출식 = 
$$\frac{\text{일반병동 간호사 수}}{\text{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일반병동 간호사 수
  -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
  - ✓ 2019년 1~4분기 근무 간호사 수의 4분기 평균 적용
- 일반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 평가대상기간(19.1.1.~12.31.)에 일반병동에서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계 일평균, 양입법 적용(입·퇴원일 모두 포함)
- 지표값 표준화 시 최댓값( $X_{max}$ )은 0.78 적용

# I .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② 경력간호사 비율

- 산출식 =  $\frac{3년\ 이상\ 경력간호사\ 수}{입원병동\ 간호사\ 수} \times 100$
- 3년 이상 경력간호사 수
  - ✓ 입원병동 간호사 중 동일 기관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수
- 입원병동 간호사 수
  -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적용 간호사 수
  - ✓ 2019년 1~4분기 근무 간호사

# I .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② 경력간호사 비율

- 3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경력간호사 비율
2.0	50.0% 이상
1.5	30.0% 이상 ~ 50.0% 미만
1.0	30.0% 미만
0.5	신규개설

※ 신규개설: 2017년 1월 1일 이후 신규개설 기관으로 '20년 평가대상기간 기준으로 3년 미만 기관

➢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내역의 간호사 면허번호, 입사일, 퇴사일 등이 잘못 신고 된 경우 '20. 6. 29.까지 수정 신고 및 처리 완료

# I.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 자료제출이 필요한 기관 → [별첨양식-1]
  - 간호 인력 현황 미신고 및 일부 신고한 기관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으로 적용을 원하는 기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호스피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폐쇄병동)

간호 인력  
산정 방법  
차이

###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E. POA 보고체계 운영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행번호	구분	신고분기	병동명	성명	면허번호	근무구분	근무시간

#### ▶ 차등제 신고일자 기준 간호사 산정인원

구분	2019-01-15	2019-02-15	2019-03-15	2019-04-15	2019-05-15	2019-06-15	
일반병동	0	0	0	0	0	0	
정신과폐쇄병동	0	0	0	0	0	0	

# I .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환자실

가중치 상, 4.0%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7.5.~7. 입원진료분(2차 평가)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2019년 결과 적용

# I .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생아중환자실

가중치 중, 2.7%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8.7.~12. 입원진료분(1차 평가)

# I.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가중치 중, 2.7%

- 산출식(총 10점) =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 +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필수, 5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 ②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활동(5점)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① 환자안전 전담인력 구성

- 「환자안전법」 제12조 및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
    -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 기준시점 : '19.12.31.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록 자료 활용
    -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록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6.29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수정 등록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② 환자안전 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환자 안전활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
  - ✓ 그 외 세부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 제출
- **기준시점** : '19.1.1.~12.31.

# I.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② 환자안전 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제출 자료 (미인증 또는 환자안전활동 자료 미제출 기관만 제출)
  - ✓ 2019년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월별계획, 내부직원 대상 교육계획, 활동소요예산 내역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 결재를 득한 자료
  - ✓ 2019년 환자안전위원회 활동 증빙서류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 회의록(필수), 결과보고, 성과보고 자료 등

####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I. 증빙자료 제출
--------------------	---------	-----------	--------------	-----	------------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1.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3.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자료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등록

# I .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가중치 중, 2.7%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7.10.~12. 입원진료분(8차 평가)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2019년 결과 적용

# I.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처방률

가중치 중, 2.7%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항생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9.1.~12. 외래심사분(20차 평가)

# I. 환자안전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가중치 중, 2.7%

- 음압공조 격리병상이 설치된 경우 인정
  - ✓ 음압공조 격리병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신고가 이루어진 음압공조 격리병상(중환자실 및 응급실 내 음압공조 격리병상 포함)
    -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료기관정책과-590, '18.7.31.)을 따름  
(이동형 음압기 미포함)
- 기준시점 : '19.12.31.
  - 음압공조격리병상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 6. 29까지 수정 신고 처리 완료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감염관리 체계운영

가중치 중, 2.7%

- 산출식(총 10점)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필수, 5점)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

+

#### 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5점)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감염관리실에 ①~③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정
  -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별표 8의2] 제1호 인력기준에 따른 의사, 간호사, 해당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감염관리실에 각각 1인 배치(총 3인 이상 배치)
  - ② 배치된 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 이수
  - ③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 전담 근무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 기준시점 : '19.12.31.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②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시 인정**
  - ✓ 감염예방·관리료 2019년 수가 산정 시 인정
    - 수가 산정 확인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적용 결과 → 2019년 1~4분기 감염예방·관리료 탭
    -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료제출
- **기준시점 : '19.1.1.~12.31.**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 제출 자료

- ✓ 감염관리 인력 배치 현황[별첨양식-2]
-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재직증명서
- ✓ 감염관리실 배치 인력의 직무기술서
- ✓ 감염관리실 전담 인력 증빙 서류(인사발령서류, 임명장)
- ✓ 의료인의 경우 면허증 사본
- ✓ 교육 이수증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1. 교육 내용 :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격리, 감염관리 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

2. 교육 이수 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3. 교육 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라.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 비고 :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감염관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에 매년 16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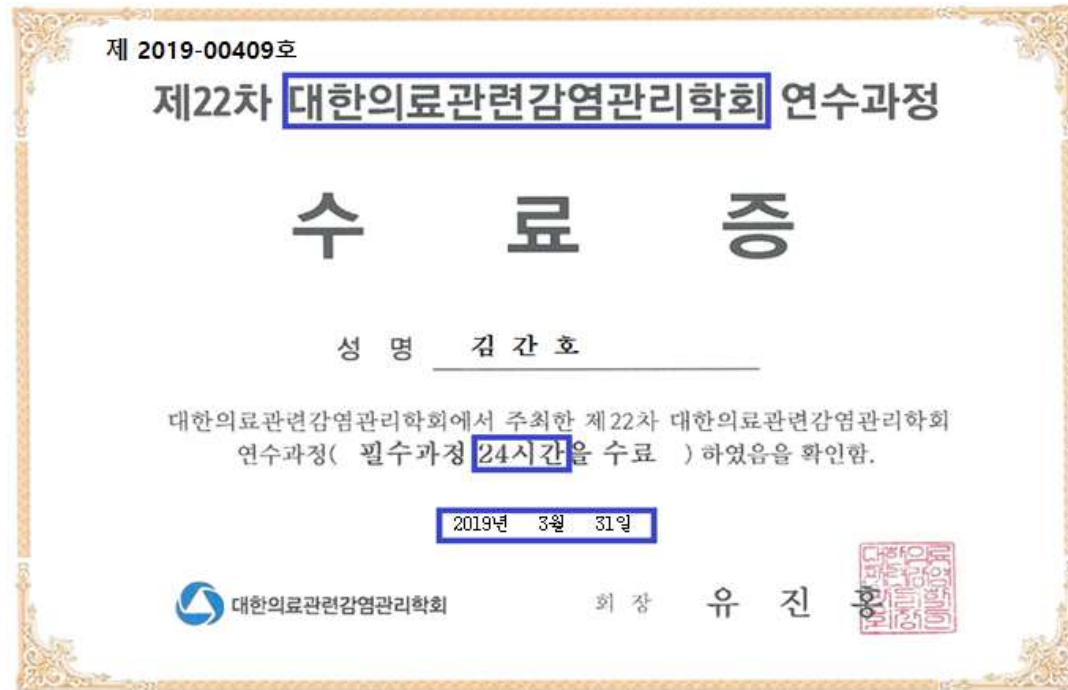
감염관리 경력 증빙자료 必  
예) 감염관리실 3년 이상  
재직증명서

# I . 환자안전 영역

의료기관 자료제출

①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교육이수증 예시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② 감염관리 위원회 구성·운영·활동

- 제출 자료 (감염예방·관리료 미산정 기관만 제출)

- ✓ 2019년 감염관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위원 구성 명단 등 포함)
- ✓ 2019년 감염관리위원회 활동 증빙서류
  - 연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회의록, 결과보고, 성과보고자료 등
  - 위원장의 확인 결재 및 참석자 명부(서명 포함) 등 실제 회의 개최 증빙 가능한 내용 포함 必



# I.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사제 처방률

가중치 하, 1.0%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주사제(주사제처방률)**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9.1.~12. 외래심사분(20차 평가)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환자안전학습 보고체계 운영 여부

가중치 하, 1.0%

- 의료기관 인증기준 중 2주기 조사기준 [2.3] 조사결과 '하'가 없는 경우 또는 3주기 조사기준 [7.3] 조사결과 인증 등급 판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
  - ✓ 3주기 인증 등급 판정 기준(①, ② 모두 충족)
    - ① 조사항목 결과 1~6번(필수) 중 '하' 없어야 함
    - ② 조사항목 결과 1~7번의 평균점수가 5점 이상이어야 함
- 기준시점 : '19.12.31.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 기관 인정)
  - 미인증 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료제출

# I .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환자안전학습 보고체계 운영 여부

- 제출 자료 (미인증 기관 중 적용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제출)

- ① [필수]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 자료
- ② [필수] 직원이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한 자료
- ③ [필수]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 자료
- ④ [필수] 분석한 사건에 대한 개선활동 수행 근거자료
- ⑤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 자료
- ⑥ [필수]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자료
- ⑦ [정규]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직원과 공유한 자료

- ① 제출서류 내, ②~⑦의 내용이 없는 경우 '하'로 판정
- ②~⑦ 수행은 ① 제출내용에 근거하여 시행, ① 내용과 상이한 정도를 평가

# I.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학습  
보고체계  
운영 여부

### • 조사항목 충족기준

조사항목 충족률	90% 이상	60% 이상 ~ 90% 미만	60% 미만
조사결과	상	중	하
점수	10점	5점	0점

###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로 차등제 산정 현황 ▼ B. 시설현황 ▼ C. 전문의 현황 ▼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I. 증빙자료 제출 ▼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1.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3.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자료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등록

# I. 환자안전 영역

질병관리본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가중치 하, 1.0%

- 산출식 =  $\frac{\text{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수}}{\text{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수}} \times 100$
- 필수검사를 실시한 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호흡기결핵 환자 중 필수검사(흉부X선, 도말검사, 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를 완료한 환자
- 호흡기결핵으로 신고된 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신고·보고를 한 결핵환자 중 결핵질병코드 소분류 A15, A16, A19로 신고된 환자
  - ✓ 신고·보고일 기준 60일 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완료한 경우 제외

# I. 환자안전 영역

질병관리본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 실시율에 따라 5개 등급화 적용

등급	실시율
1	80.0% 이상
2	70.0% 이상 ~ 80.0% 미만
3	60.0% 이상 ~ 70.0% 미만
4	50.0% 이상 ~ 60.0% 미만
5	50.0% 미만

- 기준시점 : '19.1.1~12.31.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후 시행된 필수 검사가 신고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0. 6. 29.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완 신고

# I .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가중치 하, 1.0%

$$\textcircled{1} \text{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frac{\text{향정 처방변경 건수} + \text{향정 사유기재 건수}}{\text{향정 중복사례 건수}} \times 60$$

+

$$\textcircled{2} \text{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frac{\text{향정 외 처방변경 건수} + \text{향정 외 사유기재 건수}}{\text{향정 외 중복사례 건수}} \times 40$$

- 중복사례 건수
  - ✓ 타 기관, 타 의사간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으로 정보제공(DUR 점검 팝업)된 외래 처방 건수
  - ✓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사례 건수 중 1~2일 중복인 경우 제외
- 사유기재 건수: 처방변경 없이 적절한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한 외래 처방 건수
  - ✓ 부적절 사유기재 건 제외

# I . 환자안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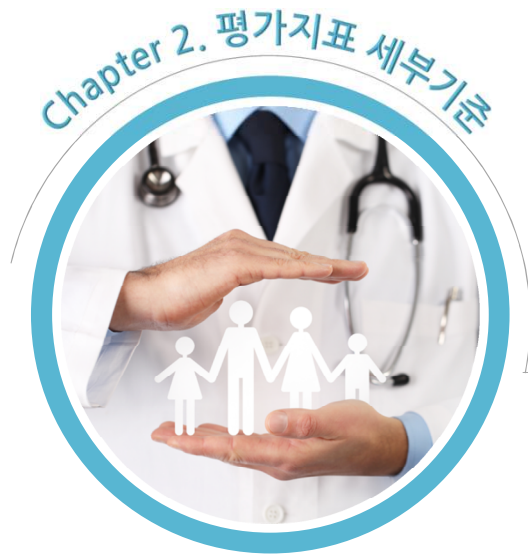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예방률
3	90% 이상
2	80% 이상 ~ 90% 미만
1	80% 미만

- 기준시점 : '19.4.1.~12.31.



## II. 의료질 영역

---

## II. 의료질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폐렴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폐렴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7.10.~12. 입원진료분(3차 평가)
  - 매년 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2019년 결과 적용

## II. 의료질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상동맥우회술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관상동맥우회술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7.7.~ '18.6. 입원진료분(5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급성기뇌졸중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8.7.~ 12. 입원진료분(8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혈액투석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8.3.~8. 외래진료분(6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  
폐질환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8.5.~'19.4. 외래진료분(5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천식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천식 평가 결과 활용**
- 기준시점 : '18.7.~'19.6. 외래진료분(6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천식

- 천식 평가지표(7개)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화 적용

✓ 종합점수 =  $\frac{\text{각 지표별 값의 합}}{\text{산출된 지표 총 개수}}$

➢ 낮을수록 좋은 지표값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값으로 변환하여 적용(100-기관점수)

- ✓ 5등급화 적용

등급	종합점수 구간
1	85점 이상
2	75점 이상 ~ 85점 미만
3	65점 이상 ~ 75점 미만
4	55점 이상 ~ 65점 미만
5	55점 미만

## II. 의료질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마취

가중치 중, 2.4%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마취 평가** 결과 적용
- 기준시점 : '18.10.~12. 입원진료분(1차 평가)

## II. 의료질 영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가중치 하, 1.0%

- 산출식(총 6점) = 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② 자기결정 존중비율

① 윤리위원회 설치(필수, 3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경우 인정

+

② 자기결정 존중비율(3점)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  
총 연명의료결정이행 건수  $\times 100$

## II. 의료질 영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경우 인정
  - ✓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봄
- 기준시점 : '19.12.31.

# II. 의료질 영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②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 산출식 = 
$$\frac{\text{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text{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 \times 100$$

•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 건수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별지 제13호서식]의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표시(✓)된 건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3. 26.>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행 내용		
[ ] 체외생명유지술 [ ] 수혈		
[ ] 그 밖의 연명의료( )		
✓ [ ] <u>별지 제1호서식의 연명의료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1호)</u>		
[ ] <u>별지 제10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u>		
환자의 의사 확인방법	[ ] (법 제17조제1항제2호)	
	[ ] (법 제11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 (법 제17조제1항제3호)	
[ ] (법 제12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법 제18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 II. 의료질 영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②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

- 총 연명의료결정 이행 건수
  - ✓ 의료기관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19.1.1.~12.31. 동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한 건수(통보일 기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과 이행 기관이 다른 경우 각각 이행 건수에 포함
- 제외 조건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결정 건,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건
- 자기결정 존중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자기결정 존중비율
3	40.0% 이상
2	20.0% 이상 ~ 40.0% 미만
1	0% 초과 ~ 20.0% 미만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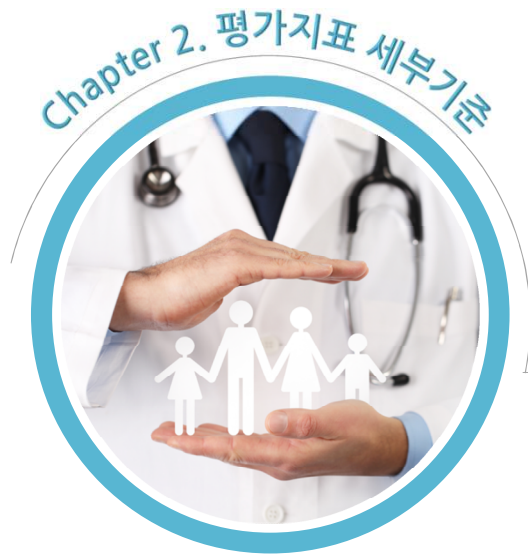
# I . 환자안전 영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

[시범지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항목 중 **환자경험 평가 결과 활용**
- **기준시점** : '19.5.1.~10.14. 청구접수분(입원)(2차 평가)



### III. 공공성 영역

---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분만실 운영

가중치 상, 4.0%

• 산출식(총 4점) = ① 분만실 운영 + ② 분만 환자 수

#### ① 분만실 운영 (2점)

- 분만실 병상이 설치된 경우 인정
- 기준시점 : '19.12.31.

#### ② 분만 환자 수 (2점)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중 분만 환자

➤ 분만실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 6. 29.까지 수정 신고 및 처리 완료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② 분만 환자 수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분만 환자**
- 분만 환자 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환자 수
2	50명 이상
1	1명 이상 ~ 50명 미만
0	0명

- **기준시점** : '19.1.1.~12.31.

# III. 공공성 영역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의  
적정성

가중치 상, 4.0%

- 산출식(총 10점) = ① + ② + ③ + ④ + ⑤

연번	응급의료기관 평가 영역	세부 지표	점수
①	효과성	전담전문의	2점
②		전담간호사	2점
③	적시성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2점
④	기능성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분담률(배점) + 중증상병 해당환자 구성비(배점)	2점
⑤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2점

-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 활용

# III. 공공성 영역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지표 평가점수 산출기관의 순위 퍼센타일에 따라 6개 구간 적용

점수	세부 지표
2.0	80퍼센타일 이상
1.6	60퍼센타일 이상 ~ 80퍼센타일 미만
1.2	40퍼센타일 이상 ~ 60퍼센타일 미만
0.8	20퍼센타일 이상 ~ 40퍼센타일 미만
0.4	20퍼센타일 미만
0	평가점수 미산출

- ▶ 순위 퍼센타일 전·후 평가점수 차이가 큰 기관을 기준으로 점수 구간 적용
- ▶ ④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는 배점의 합이 동일한 경우 세부지표별 표준화 점수의 합을 적용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환자실 운영비율

가중치 중, 2.0%

- 산출식 =  $\frac{\text{중환자실 병상 수}}{\text{일반 및 정신과폐쇄 병상 수}} \times 100$
- 중환자실 병상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 병상
- 일반 및 정신과폐쇄 병상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일반입원실과 정신과폐쇄 병상
- 기준시점 : '19.12.31.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0. 6. 29.까지 수정 신고 및 처리 완료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가중치 중, 2.0%

- 산출식 =  $\frac{\text{실제 재원일수}}{\text{기대 재원일수}} \times \text{평균 재원일수}$
- 실제 재원일수
  - ✓  $\sum (\text{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건당 재원일수} \times \text{해당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 기대 재원일수
  - ✓  $\sum (\text{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건당 재원일수} \times \text{해당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 평균 재원일수
  - ✓ 전체 기관의 재원일수 / 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입원 건수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적용 대상** : 평가 대상기간에 입·퇴원이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진료과목** : 청구명세서 진료과목별 코드
- **질병군** : KDRG 4.2 버전의 RDRG (6자리)
- **제외조건**
  - ✓ 재원일수 1일, 한방입원, 정상 신생아
  - ✓ Pre-MDC, MDC 19, MDC 20, Error DRG
  - ✓ 전체 기관의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청구 20건 이하 진료과목별 질병군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정규분포 비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비율
3	30.0% 이하
2	30.0% 초과 ~ 70.0% 미만
1	70.0% 이상

- 기준시점 : '19.1.1.~12.31.

# III. 공공성 영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가중치 중, 2.0%

• 산출식(총 5점) = ① 지정 비율(3점) + ② 운영 비율(2점)

### ① 지정 비율(3점)

㉠ $\frac{\text{지정 병상}}{\text{최대 참여가능 (일반) 병상}} \times 100$	50% 이상: 1점 75% 이상: 2점 100% 이상: 3점
㉡ $\frac{\text{지정 병상}}{\text{총허가(일반) 병상}} \times 100$	30% 이상: 1점 40% 이상: 2점 50% 이상: 3점

### ② 운영 비율(2점)

㉠ $\frac{\text{운영 병상}}{\text{최대 참여가능 (일반) 병상}} \times 100$	50% 이상: 1점 75% 이상: 2점
㉡ $\frac{\text{운영 병상}}{\text{총허가(일반) 병상}} \times 100$	30% 이상: 1점 40% 이상: 2점

➤ ㉠, ㉡ 중 높은 점수 적용

# III. 공공성 영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 지정 병상
  - ✓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한 병동의 병상 수
- 운영 병상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개시 병동의 병상 수
- 최대 참여가능(일반) 병상 : 160병상
- 총 허가(일반)병상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시설현황 중 일반입원실 병상 수
- 기준시점 : '19.12.31.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가중치 중, 2.0%

- 8세 미만 입원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
  -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 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질병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2호(KDRG 4.2버전)
- 기준시점 : '19.1.1.~12.31.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가중치 중, 2.0%

- 산출식 = 
$$\frac{\text{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환자 수}}{\text{건강보험 입원환자 수}} \times 100$$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입원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 **건강보험 입원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 **기준시점** : '19.1.1.~12.31.

# III. 공공성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

가중치 중, 2.0%

- 산출식 =  $\frac{\text{의료급여 환자 수}}{\text{전체 환자 수}} \times 100$
- 의료급여 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와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의 합
- 전체 환자
  - ✓ 평가 대상기간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와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실 인원)의 합
-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III. 공공성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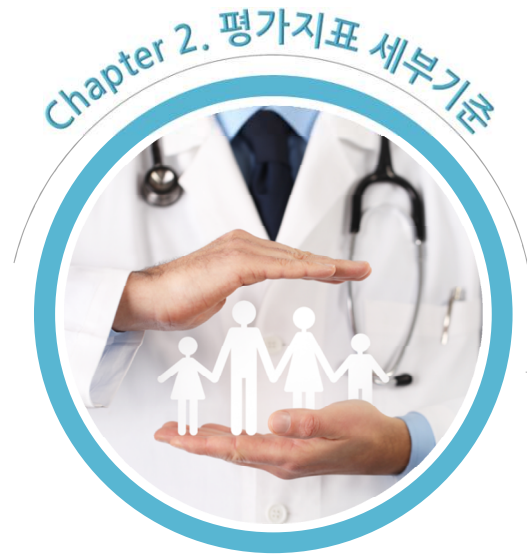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환자 비율

- 의료급여 환자 비율에 따라 3등급화 적용

등급	비율
1	5.0% 이상
2	3.0% 이상 ~ 5.0% 미만
3	3.0% 미만

- 기준시점 : '19.1.1.~12.31.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가중치 상, 2.0%

$$\bullet \text{ 산출식} = \frac{\text{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수}}{\text{입원환자 수}} \times 100$$

### •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별표 1] 입원환자의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 중 전문진료질병군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2호(KDRG 4.2버전)

### • 입원환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경증질환  
비율

가중치 상, 2.0%

$$\bullet \text{ 산출식} = \frac{\text{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수}}{\text{외래 재진환자 수}} \times 100$$

### • 외래 재진 경증질환 환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 환자 중 경증질환 환자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상병(산정특례 대상 52개) 적용

### • 외래 재진환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진환자(재진진찰료 횟수의 합)
-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의료기관 자료제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가중치 상, 2.0%

• 산출식 = 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50%)+ ② 병상 당 회송 비율(50%)

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가~다 충족시 1.5점, 가~라 충족 시 3점)

- 가) 의료기관 소속이면서 진료 의뢰·회송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단, 타 업무 병행은 인정하지 않음
- 나)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마련
- 다) 진료협력 병의원 현황(리스트)
- 라) 의료기관 소속의 진료 의뢰·회송 업무 전담 인력 중 의료인이 포함된 경우

+

② 병상 당 회송 비율(3점)

$$\frac{\text{회송환자관리료 청구 건수}}{\text{병상 수}}$$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의료기관 자료제출

### ①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 기준시점 : '19.12.31.
- 제출 자료
  - ✓ 진료 의뢰·회송 전담 인력의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
  - ✓ 의료인 면허증 사본(의료인인 경우)
  - ✓ 진료 의뢰·회송 운영체계 및 절차 등에 관한 병원 내부규정 또는 지침
  - ✓ 진료협력센터 병·의원 현황

####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I. 증빙자료 제출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1.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3.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자료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증빙자료.pdf		파일등록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② 병상 당 회송 비율

- 산출식 =  $\frac{\text{회송환자관리료 청구 건수}}{\text{병상 수}}$
- 회송환자관리료 청구 건수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외래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 회송환자관리료 청구 명세서 건수
- 병상 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에 기재된 허가병상
- 회송 비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비율
3	3.0 이상
2	1.0 이상 ~ 3.0 미만
1	0 초과 ~ 1.0 미만
0	0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가중치 중, 1.5%

- 산출식 = 
$$\frac{\text{입원 연인원}}{\text{외래 연인원}}$$

- 입원 연인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입원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합, 양입법 적용(입·퇴원일 모두 포함)

- 외래 연인원

- ✓ 평가 대상기간('19.1.1.~12.31.)에 외래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진찰료 횟수의 합)
- ✓ 같은 날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환자 수를 각각 산정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의료기관 제출자료

입원 시 상병  
(POA)  
보고체계 운영

가중치 중, 1.5%

## ①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3점)

-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마련
- ✓ 의료기관 소속의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 배치
- ✓ 기준시점 : '19.12.31.

+

## ② POA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 체계 구축·운영(3점)

- ✓ POA 코드 및 정확성 평가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
- ✓ POA 관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인정
- ✓ 기준시점 : '19.1.1.~12.31.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 입원 시 상병 (POA) 보고체계 운영

#### • 제출자료

- ✓ 전체 상병 대상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규정
- ✓ 관리 인력의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
- ✓ 환자별 POA 입력 및 수정, 자원 중 POA 미비관리를 수행한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자료(환자 목록은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POA 관련 개선 활동 기록지(교육 및 회의 증빙 자료)

#### • 자료제출 환자 목록 확인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	E. POA 보고체계 운영				
증빙자료 업로드								
POA 보고체계 운영 증빙자료.pdf								
파일등록								
POA 전산시스템 관련 자료제출 환자 목록								
행번호	접수번호	접수년도	명일련	수진자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과목	청구 요양개시일
1	0123456	2020	0000400	나건강	1973-08-22	남	흉부외과	2019-12-18
2	0123456	2020	0000500	홍길동	1962-03-18	남	신경과	2019-12-01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 입원 시 상병 (POA) 보고체계 운영

- POA 관리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자료 예시 \_ POA 입력 및 수정

✓ 자료제출 환자 목록 : 나건강, 청구요양개시일 2019-12-18

→ 청구요양개시일이 포함된 입원 화면 자료 제출

상병기록 등록관리 DRG 조회 상병이력 EMR 사전심사 퇴원요약

 등록 번호 12-3456 **성명 나건강** 주민번호 730822-1\*\*\*\*\* 성별/나이 M / 48  
 진료과 흉부외과 진료의사 김철수 환자유형 건강보험 병동/병실 121W/21

**상병등록** 행추가 수정 저장 닫기

순번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접수일자	상병등록일자	과	의사	POA	수정	작성일자
<input type="checkbox"/>	1	주상병 J939	상세불명의 기흉 / Pneumothorax, unspecified	2019-12-18	2019-12-18	CS	CS1	Y	CS1	2019-12-18
<input type="checkbox"/>	2									

상병조회

순번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접수일자	상병등록일자	과	의사	등록번호	입원시상병	작성일자
1	주상병	J939	상세불명의 기흉 / Pneumothorax, unspecified	2019-12-18	2019-12-18	CS	CS1	12-3456	Y	2019-12-18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입원 시 상병  
(POA)  
보고체계 운영

### • POA 관리 전산시스템 화면 증빙자료 예시 \_ 재원 중 미비관리

**EMR미비기록관리**      **미비기록 점검**                    

구분: [재원] 재원환자목록  
 미비점검: 전체  
 과 코드: CS  
 등록번호: 123456  
 재원일자: 2019-12-18   

입원 미비기록 목록    퇴원 미비기록 목록

등록번호	이름	재원일수	과
12-3456	나건강	20	CS

**환자정보**

등록번호 12-3456    **성명 나건강**    주민번호 730822-1\*\*\*\*\*    과 CS    입원일자 2019-12-18

순번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POA
1	주상병	J939	상세불명의 기흉 / Pneumothorax, unspecified	Y

**미비기록 점검**

No	구분	접수일자	전공의사	항목	완료여부	완료일자	비고
					Y N	2019-12-24	
1				주호소	<input type="checkbox"/>		
2	입원			<b>현병력 (POA 포함)</b>	<input type="checkbox"/>		
3	기록지			경과기록*일단위	<input type="checkbox"/>		
4				수술기록	<input type="checkbox"/>		

No	구분	접수일자	전공의사	항목	완료여부	완료일자	비고
					Y N	2019-12-24	
1				<b>경과기록*일단위 (POA 포함)</b>	<input type="checkbox"/>		
2	경과			전과기록	<input type="checkbox"/>		
3	기록지			수술기록	<input type="checkbox"/>		
4				특수검사 및 처치기록	<input type="checkbox"/>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질병관리본부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참여

가중치 하, 1.0%

-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한 경우 인정(총 10점)
  -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감시대상지표
    - ① 중환자실    ② 수술부위    ③ 신생아 중환자실
    - ④ 손위생    ⑤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 ✓ 참여 감시대상지표가 1개인 경우 5점, 2개 이상인 경우 10점
- 기준시점 : '19.12.31.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질병관리본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가중치 하, 1.0%

- 다제내성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제내성균 4종 감염증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 참여한 경우 인정
  - ✓ 다제내성균 4종
    - ①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 ②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 ③ 다제내성녹농균(MRPA)
    - ④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 기준시점 : '19.12.31.

# IV.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인증 여부

[시범지표]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
- **기준시점** : '19.12.31.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은 인증 결과 통보일 적용

Chapter 2. 평가지표 세부기준



## V. 교육수련 영역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확보율

가중치 상, 0.8%

- 산출식(총 10점) = ① 인턴 확보율(5점) + ② 레지던트 확보율(5점)
- 인턴 또는 레지던트 정원 확보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비율
5	90.0% 이상
4	80.0% 이상 ~ 90.0% 미만
3	70.0% 이상 ~ 80.0% 미만
2	60.0% 이상 ~ 70.0% 미만
1	50.0% 이상 ~ 60.0% 미만
0	50.0% 미만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9년 3월 기준)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가중치 상, 2.6%

-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frac{\text{전속전문의 수}}{\text{인턴 정원}}$  (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 전속전문의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frac{\text{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text{수련과목별 레지던트 1년차 정원}}$

- ✓ 지도전문의 :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 지도전문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로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정원책정 지도전문의)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 산출방법

- ① 각 수련과목별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속)전문의 수 표준정규화
- ② 정규분포 비율에 따른 구간별 점수화
- ③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점수	정규분포 비율
5	81.0% 이상
4	62.0% 이상 ~ 81.0% 미만
3	43.0% 이상 ~ 62.0% 미만
2	24.0% 이상 ~ 43.0% 미만
1	5.0% 이상 ~ 24.0% 미만
0	5.0% 미만

$$\frac{(\text{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times 30 (\text{환산점수})}{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점  
(각 과목별 최대 점수)

- 전속·지도전문의(2019년 9월 말 기준), 전공의 정원(2020년 전공의 정원)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가중치 상, 2.6%

-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산출식

① 인턴 수련병원 =  $\frac{\text{진료실적}}{\text{전속전문의 수}}$  (단,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한함)

- ✓ 전속전문의 :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 =  $\frac{\text{수련과목별 진료실적}}{\text{수련과목별 지도전문의 수}}$

- ✓ 지도전문의 :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전공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
- ✓ 진료실적 : 입원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진단검사 건수, 일반영상 건수, 특수촬영 건수, 조직검사, 세포검사 건수, 응급실내원환자, 영상검사, 체외검사, 치료검사 건수, 마취 건수, 업무상 질병외래, 직업병 진단 건수 등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산출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 산출방법

- ① 각 수련과목별 지도(전속)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의 **표준정규화**
- ② 정규분포 비율에 따른 **구간별 점수화**
- ③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30점으로 환산**

점수	정규분포 비율	
5	40.5% 이상 ~ 59.5% 미만	
4	31.0% 이상 ~ 40.5% 미만	59.5% 이상 ~ 69.0% 미만
3	21.5% 이상 ~ 31.0% 미만	69.0% 이상 ~ 78.5% 미만
2	12.0% 이상 ~ 21.5% 미만	78.5% 이상 ~ 88.5% 미만
1	2.5% 이상 ~ 12.0% 미만	88.5% 이상 ~ 97.5% 이하
0	2.5% 미만	

$$\frac{(\text{각 수련과목별 점수 합산}) \times 30 (\text{환산점수})}{125}$$

※ 125 = 25과목(최대 수련과목 수) × 5점  
(각 과목별 최대 점수)

- 진료실적(2018년, 1년 동안), 전속·지도전문의(2019년 9월 말 기준)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 수련환경 모니터링

가중치 상, 0.8%

- 산출식= ① 휴일 준수 현황 + ② 야간 당직 일수 준수 현황

① 휴일 준수 현황(5점)

$$\frac{\text{휴일 준수 전공의 수}}{\text{전체 전공의 수}} \times 100$$

+

② 야간 당직 일수 준수 현황(5점)

$$\frac{\text{야간 당직 일수 준수 전공의 수}}{\text{전체 전공의 수}} \times 100$$

- 휴일 또는 야간 당직 일수 준수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준수율
5	100%
4	90% 이상 ~ 100% 미만
3	80% 이상 ~ 90% 미만
2	70% 이상 ~ 80% 미만
1	60% 이상 ~ 70% 미만
0	60% 미만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8년 6월 기준)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중치 중, 0.3%

-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 ① 수련교육위원회 규정의 적절성    ② 규정에 따른 위원구성의 적합성
- ③ 정기적 개최 여부                      ④ 회의결과 보고 여부
- ⑤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적절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3	적절	세부기준 4개 항목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0~1개 항목 충족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8년, 1년 동안)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가중치 중, 0.3%

-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 ①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②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재정 지원
- ③ 국내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④ 국외 학술활동의 행정 및 일부 재정 지원

-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①, ②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① 또는 ②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③ 또는 ④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③ 또는 ④에서 행정적 지원만 할 경우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8년, 1년 동안)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가중치 중, 0.3%

-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 ①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관련 규정 유무
  - ② 규정 내용(의견수렴 주기 및 대상 포함)
  - ③ 시행의 충실성 여부      ④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의 문서화

-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4개 항목 모두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3개 항목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2개 항목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1개 항목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8년, 1년 동안)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가중치 하, 0.2%

- 세부기준 충족 여부 평가

- ①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유무(필수)
- ② 평가 반영 여부(필수)
- ③ 포상기준의 구체성
- ④ 포상 종류의 다양성
- ⑤ 포상 심의 절차적 공정성

- 판단기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적용

점수	판정	판단기준
4	매우 우수	세부기준 5개 항목 모두 충족
3	우수	세부기준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 중 2개 충족
2	보통	세부기준 ①, ②를 충족하고, ③, ④, ⑤ 중 1개 충족
1	미흡	세부기준 ①, ②만 충족
0	매우 미흡	세부기준 모두 미충족

- 2019년 수련환경평가(2018년, 1년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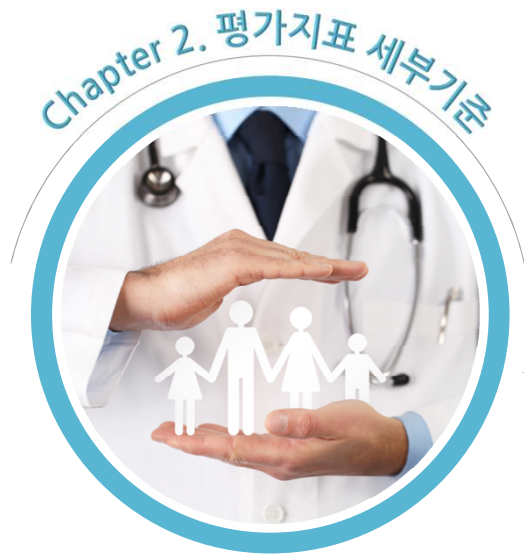
# V. 교육수련 영역

## 수련환경평가본부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가중치 없음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
  - ✓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보건복지부, 2018.11.1.) 위반 안건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응 조치 미이행으로 '19년에 의결된 수련기관(의결일 기준)
  - ✓ 지표 가중치 '없음' 이나, 대응조치 미이행 시 교육수련 영역 등급 제외



## VI. 연구개발 영역

# VI. 연구개발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의사당  
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가중치 상, 2.0%

- 산출식 = 
$$\frac{\text{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text{의사 수}}$$
- IRB 주관 연구책임자
  - ✓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의 IRB(공용 IRB 포함) 승인을 받은 연구의 주관 연구책임자
  - ✓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승인 받은 경우에 인정, 중복 승인 건은 불인정 (1인 1건 인정)
- 의사 :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 기준시점 : IRB 승인('19.1.1.~12.31.), 의사 수('19.12.31.)



# VI. 연구개발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가중치 상, 2.0%

- 산출식 =  $\frac{\text{지식재산권 수}}{\text{의사 수}} \times 100$
- 지식재산권
  - ✓ 국내 특허: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 ✓ 국외 특허: 각 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라 출원된 국외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해 출원된 국제특허(진입일이 아닌 출원일 기준)
  - ✓ 특허 출원인이 의료기관(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의료기관 소속 직원으로(출원인이개인인 경우 제외) 해당 의료기관 재직 중 등록(출원)된 경우 인정
- 의사: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
- 기준시점 : 지식재산권 수('19.1.1.~12.31.), 의사 수('19.12.31.)

# VI. 연구개발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 제출 자료

- ✓ 지식재산권 현황 [별첨양식-4]
- ✓ 국내 특허 등록증
- ✓ 국외 특허 출원증명서
- ✓ 의료기관 소속 발명인의 재직증명서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G. 지식재산권**

▶ 증빙자료 업로드  
지식재산권 증빙자료.zip    파일등록

▶ 지식재산권 현황

행번호	구분	연번	등록일자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출원번호)	출원국가	특허권자 (출원인)

# VI. 연구개발 영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가중치 중, 1.0%

-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인정
- ✓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식약처 공고 제2020-020호)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현황(식약처 공고 제2019-559호) 활용
- 기준시점 : '19.12.31.

# VI. 연구개발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 연구비 지출 여부

가중치 중, 1.0%

-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를 **3천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인정
-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 ✓ 2019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상 '의료비용'의 '자체연구비' 계정과 '의료외 비용'의 '연구비용' 계정을 합산한 금액
- 기준시점 : 2019년 회계기준
  - ✓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의료기관의 경우는 (당)기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 VI. 연구개발 영역

## 의료기관 제출자료

연구비  
지출 여부

- 제출 자료

- ✓ 연구비 지출 내역 [별첨양식-5]
- ✓ 의료기관 재무제표(2019년 회계기준 손익계산서)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H.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업로드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pdf    파일등록

연구비 지출 내역

의료비용	의료비용 중 자체연구비	의료외비용	의료외비용 중 연구비용

CHAPTER • 3

# 세부 평가방법



# 1.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환자안전 영역 (37%)	➤ 의료기관 인증 여부	상	5.0
	➤ 입원환자당 의사수		4.0
	➤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 중환자실		
	➤ 신생아중환자실	중	2.7 (16/6)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항생제 처방률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감염관리체계 운영		
	➤ 주사제 처방률	하	1.0
	➤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 1.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의료질 영역 (18%)	➤ 폐렴	중	2.4 (17/7)
	➤ 관상동맥우회술		
	➤ 급성기뇌졸중		
	➤ 혈액투석		
	➤ 만성폐쇄성폐질환		
	➤ 천식		
	➤ 마취		
	➤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하	1.0
	➤ 환자경험 (시범지표)	없음	

# 1.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공공성 영역 (20%)	➤ 분만실 운영	상	4.0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	2.0
	➤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 의료급여 환자 비율		

# 1.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11%)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	2.0
	➤ 외래 경증질환 비율		
	➤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중	1.5
	➤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하	1.0
	➤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없음	

# 1. 평가영역별 가중치 그룹 및 지표별 가중치

평가영역	평가지표	가중치 그룹	지표별 가중치(%)
교육수련 영역 (8%)	➤ 전공의 확보율	상	0.8
	➤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2.6
	➤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0.8
	➤ 수련환경 모니터링	중	0.3 (1/3)
	➤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하	0.2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없음	
연구개발 영역 (6%)	➤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상	2.0
	➤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중	1.0
	➤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 연구비 지출 여부		

## 2.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 '최소 0, 최대 1'로 만들

$$Y = \frac{(X - X_{\min})}{(X_{\max} - X_{\min})}$$

Y : 표준화 값

X : 원 값 (지표별 결과를 수치화 한 값,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X_{\min}$  : 최솟값

$X_{\max}$  : 최댓값

(예시)

입원환자당 의사수	A기관	B기관	C기관
최댓값( $X_{\max}$ ) = 0.39 적용	0.45	0.33	0.04
	최댓값 초과		최솟값

A기관 지표값 표준화 과정 :  $(0.39 - 0.04) / (0.39 - 0.04) = 1$

B기관 지표값 표준화 과정 :  $(0.33 - 0.04) / (0.39 - 0.04) = 0.29 / 0.35 (0.8285\dots)$

C기관 지표값 표준화 과정 :  $(0.04 - 0.04) / (0.39 - 0.04) = 0$

# 3. 평가방법

- ① 평가지표별 표준화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 산출
- ② 각 영역의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영역별 점수를 산출(소수점 2자리까지), 영역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 ③ 평가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함

지표값 표준화  
→ 최소 0, 최대 1

① 표준화 값 × 가중치  
(소수점 처리하지 않음)

② 환자안전 영역  
지표점수 합산  
(소수점 2자리까지)

평가영역	평가지표	지표값	가중치	지표점수	평가점수
환자안전 영역	➤ 의료기관 인증 여부	인증	5.0	5.0	26.59
	➤ 입원환자당 의사수	0.33	4.0	3.314...	
	⋮	⋮	⋮	⋮	
	➤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등급)	1	1.0	1.0	
	➤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2	1.0	0.666...	
의료질 영역 ⋮	➤ 폐렴 (등급)	1	2.4(17/7)	2.428...	13.45
	➤ 관상동맥우회술 (등급)	2	2.4(17/7)	2.023...	
	⋮	⋮	⋮	⋮	

## 4. 등급화

---

-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의 등급화 구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 • 영역별 등급제외 기준

#### 1)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 ✓ 등급제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2) 교육수련 영역

- ✓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 ✓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 ✓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 3) 연구개발 영역

- ✓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 CHAPTER . 4

# 자료 제출



# 자료제출 안내

---

- 제출기간: '20. 6. 22.(월) ~ 7. 13.(월) 18:00까지(3주간)
- 제출처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 ✓ 문의: (033) 739-3580~9, 3590~1
  - ✓ 제출방법
    - (웹)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http://aq.hira.or.kr>  
(평가조사표 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 (서면) 등기우편으로 제출

# 현황조사 안내

- 진료의뢰서 현황 (외래 경증질환 상병확대 관련 자료)
  -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의뢰서 현황 제출** (별첨양식-7) (종합병원만 해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 (보건복지부 고시 2018-224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한 경우

## 웹 제출 화면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I. 증빙자료 제출
기타				
5. (현황조사) 외래 경증질환 상병 확대 관련 자료			파일등록	서식저장

## Chapter 4. 자료 제출



# 1. 로그인

---

# 1. 로그인

The screenshot shows a web portal with a navigation bar at the top containing: 지표정의 및 산출기준, 평가조사표관리, 평가결과, 평가활용, 사후관리, and 알림방.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공인인증서 로그인**: A login section with buttons for '인증서등록' and '공인인증센터', and links for '직접성평가 소개' and 'EMR 연계프로그램'.
- E-평가 자료 홍보**: A section with a dark image and the text 'E-평가 자료 홍보'.
- 평가알림방**: A section with a table of evaluation notices. The table has columns for '구분', '사용자', '발급자', and '만료 날짜'. Below the table are buttons for '인증서 검증', '인증서 보기', and '인증서 관리', along with a text input field and '취소' and '확인' buttons.
- 평가 설명회**: A section with a list of evaluation explanation meetings, including dates and locations like '(원주) 2020년도 「수술의 예방...」' and '(서울) 2020년도 「수술의 예방...」'.

An '인증서 선택' (Certificate Selection) dialog box is overlaid in the center, featuring the logo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the slogan '온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It lists certificate storage methods: 이동식디스크, 보안토큰, USB토큰, 스마트카드, and 하드디스크. The dialog also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구분', '사용자', '발급자', and '만료 날짜', and buttons for '인증서 검증', '인증서 보기', '인증서 관리', '취소', and '확인'.

## 2. 사용자 권한등록

지표정의 및 산출기준 **평가조사표관리** 평가결과 평가활용 사후관리 알림방 샘플

적정성평가  
• **조사표작성자관리**  
• 상시조사표관리  
• 상시조사표 시뮬레이션  
• 상시조사표 통계  
• 제출용조사표 작성  
• 조사표이력 조회  
• 신뢰도점검 자료제출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조사표작성자관리  
**사용자정보관리**  
작성자 현황관리

상시조사표관리  
상시조사표 시뮬레이션  
상시조사표 통계  
제출용조사표 작성

**사용자 권한설정**

평가항목	항목관리자	작성자
정신건강 입원영역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type="checkbox"/>
비정기조사표(환자경험)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type="checkbox"/>
<b>의료질평가</b>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type="checkbox"/>

- 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적정성평가 > 조사표작성자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사용자 권한설정' 메뉴에서 '의료질평가' 항목관리자 또는 작성자 선택 후 저장

### 3. 사용자 로그인

지표정의 및 산출기준   평가조사표관리   평가결과   평가활용   사후관리   알림방   샘플

적정성평가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사용자로그인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명     

· 비밀번호  

- 경로: 평가조사표관리 > 의료질평가 >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 등록된 권한에 따라 사용자 선택 후 로그인

Chapter 4. 자료 제출



## II. 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 2. 엑셀업로드(2)

부가정보 보기 ⓘ ⑤

의료질평가

평가년도 2020 요약기관 제출기간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 B. 시설현황 ▼ C. 전문의 현황 ▼ D. 감염관리체계 운영 ▼ E. POA 보고체계 운영 ▼ F. IRB 승인 연구책임자 ▼ G. 지식재산권 ▼ H. 연구비 지출 ▼

증빙자료 업로드

파일등록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전체삭제 서식(엑셀)저장 자료업로드 ③

업로드할 파일 선택

내 PC > 다운로드 > F합\_IRB 승인 연구책임자 ◀ 파일선택

파일 이름(N): 모든 파일 (\*.\*)

열기(O) 취소 ④

출력 저장 ⑥

- ③ [자료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
- ④ 작성한 파일 선택 후 [열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
- ⑤ 오류점검 확인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후 재 업로드

부가정보 보기 ⓘ

오류점검	행번호	오류점검
F합	1행	연번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F합	2행	근무시작일자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F합	3행	승인일자항목항목의 유효값을 벗어 났습니다.

엑셀저장

- ⑥ 오류점검내역이 없으면 [저장] 가능



## 4. 증빙자료 업로드

부가정보 보기 ⓘ

□ 의료질평가 최종 제출 접수증출력

평가년도 2020 요약기관

A.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 증빙자료 업로드

① 파일등록

□ 증빙자료 업로드 팝업

② 추가 삭제 다운로드

첨부파일

파일명	파일용량

전체삭제 서식(엑셀)저장 자료업로드

승인번호(IRB No.)	제목

저장 닫기

□ 증빙자료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관(공용) IRB 승인서 (※ 1인 1건 인정)  
2. 주관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출력 저장

- ① [파일등록]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를 위한 창이 생성
- ② [추가] 버튼을 눌러 파일 선택 후 [저장]
  - ☞ 증빙자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 첨부한 증빙자료를 [삭제] 후 재 업로드
  - ☞ 업로드 완료 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조회 및 저장 가능

# 5. 최종제출

의료질평가		<b>최종 제출</b>	<b>접수증출력</b>
평가년도	2020	요양기관	제출기간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E. POA 보고체계 운영	
F. IRB 승인 연구책임자		G. 지식재산권	
H. 연구비 지출		I. 증빙자료 제출	
<b>지표별 증빙자료 제출</b>			
1. 환자안전 관리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2.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자료		파일등록	
3. 진료협력센터 설치 관련 자료		파일등록	
<b>지표값 연계 신청서</b>			
4. 의료기관 변경 현황 자료		파일등록	서식저장
<b>기타</b>			
5. (현황조사) 외래 경증질환 상병 확대 관련 자료		파일등록	서식저장
<b>기관 정보등록</b>			
기관장(성명)	홍길동	<b>필수 입력사항</b>	
의료기관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저장			

- ① 자료입력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 '기관 정보등록'은 필수 입력
- ② 최종제출 후 [접수증출력] 버튼을 누르면 제출일자가 기재된 접수증 출력 가능  
 ↳ 의료기관 확인용

Chapter 4. 자료 제출



### III. 기타 안내사항

# 저장 및 인쇄

부가정보 보기 ⓘ

☑ 의료질평가 최종 제출 | 접수증출력

평가년도 2020    요양기관    제출기간

A. 간호관리로 차등제 산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E. POA 보고체계 운영    F. IRB 승인 연구책임자    G. 지식재산권    H. 연구비 지출

증빙자료 업로드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출력화면

**저장**    **인쇄**

PDF, XLS, PPT, A4, WholePage, ?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일자:

연번	연구책임자							IRB 승인 현황		제목
	성명	생년월일	면허구분	면허번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근무부서	승인일	승인번호(IRB No.)	
-										

출력 버튼 ▶ **출력** 저장

✓ [출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 내용의 저장 및 인쇄 가능

- ☞ 저장파일 형식: PDF, 한글, 엑셀 등
- ☞ 출력물의 제출일자는 최종 제출 후 기재됨

# 현황 공개 화면

A. 간호관리로 차등제 선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E. POA 보고체계 운영			F. IRB 승인 연구책임자			G. 지식재산권		
■ 시설 현황																				
순번	구분		병상수																	
1	허가병실		340																	
2	일반입원병실		300																	
3	경신과폐쇄병실		0																	
4	일반병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체병상	20																
5			응급격리병상	1																
6		신생아 중환자실	전체병상	20																
7			응급격리병상	0																
8		격리병실	전체병상	1																
9			응급공조(1인)	1																
10			응급공조(다인)	0																
11			응급기계	0																
12			비응급	0																
13			무균치료실	0																
14	특수진료실	분만실	10																	
15		응급실	응급격리병상	1																

A. 간호관리로 차등제 선정 현황			B. 시설현황			C. 전문의 현황			D. 감염관리체계 운영			E. POA 보고체계 운영			F. IRB 승인 연구책임자			G. 지식재산권			H. 연구비 저축			I. 중병자로 제출		
■ 전문의 현황																										
순번	성명	면허구분	면허번호	자격종별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입사일	최종근무일																		
1	홍길동	의사	123456	내과	23456	2017-12-01	2019-03-01	2020-02-29																		
2	김철수	의사	234567	외과	34567	2019-01-01	2017-07-01	2019-12-31																		
3																										
4																										
5																										
6																										
7																										
8																										
9																										
10																										

- ✓ 평가 대상시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황자료를 공개
- ✓ 신고 현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자원운영부 및 관할 지원에 6월 29일 까지 수정 및 보완신고
  - ☞ B탭. 시설현황, C탭. 전문의 현황



CHAPTER • 5

# '21년 평가안내

# '21년 평가 개선사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인증 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인증 유지기간에 따라 일자별 차등 적용

$$\text{산출식} = \frac{\text{인증 유지일수}}{\text{평가대상일수}}$$

# '21년 평가 개선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환자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 입원환자당 간호사수로 통합 산출

- ✓ 간호사 수 산정 시 동일 의료기관 3년 이상 경력간호사는 일정 배수 적용
- ✓ 간호사 수에 집중치료실 간호사 포함

$$\text{산출식} = \frac{\text{병동간호사 수}}{\text{병동 일평균 입원환자 수}}$$

# '21년 평가 개선사항

의료기관 제출자료

감염관리  
체계운영

- 감염관리 전담인력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병상당 인력배치 기준 충족 시 인정

# '21년 평가 개선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300병상 이상 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시 인정
  - ※ 300병상 미만 기관은 현행기준(1개 이상 설치 인정) 유지
  - ✓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료기관정책과-590, '18.7.31.)에 따른 이동형음압기 인정
  - ✓ '18.7월 이전 설치된 이동형음압기는 지자체 점검 필요

# '21년 평가 개선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 <참고 :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

공조시설	급기설비	· 타병실로의 감염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기 덕트에 HEPA필터 또는 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전외기 방식의 급기를 하여야 함
	배기설비	· HEPA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이동형 음압기(portable duct) 설치 · 배기덕트 주변에는 타 공조시스템 인입구가 없어야 함
	음압제어	· 실간 음압차 : 25Pa(-0.255mmAq) 이상을 유지 · 병실 입구에 차압계 설치 · <u>이동형 음압기 미작동시 알람장치 설치</u>
벽 및 천장, 창·문	· 병실 내 틈새는 테이프 및 시트지를 통하여 밀폐 작업 · 창문은 개폐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틈새는 밀폐 작업 · 출입문 상부 및 측면도 틈새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화장실·샤워시설	·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어야 함 · 화장실 배기팬 작동 금지(배기는 HEPA필터를 통해서 나가도록 고려)	
전선 설치	· <u>전선(또는 이동형 전선) 설치</u>	

# '21년 평가 개선사항

질병관리본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 실시율에 따른 등급구간 10%p씩 상향 적용

등급	실시율
1	90.0% 이상
2	80.0% 이상 ~ 90.0% 미만
3	70.0% 이상 ~ 80.0% 미만
4	60.0% 이상 ~ 70.0% 미만
5	60.0% 미만

# '21년 평가 개선사항

##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의료의 적정성

- 세부지표 변경
  - ✓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 → '최종치료 제공률'로 변경
- 세부지표별 가중치 비중 변경

세부지표	가중치 비중
전담전문의	18%
전담간호사	18%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18%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배점) + 중증상병해당환자 구성비(배점)	23%
최종치료 제공률	23%

# '21년 평가 개선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경증질환  
비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6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상병 (외래경증질환) 100개 적용

# '21년 평가 개선사항

수련환경평가본부

수련환경  
모니터링

- 수련과목별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 적용

$$\text{산출식} = \frac{\text{수련과목별 준수 항목수의 합}}{\text{수련과목수} \times \text{수련규칙 항목수}} \times 100$$

※ 수련규칙 8개 항목

- |                   |              |
|-------------------|--------------|
| ① 주당 최대 수련시간      | ② 최대 연속 수련시간 |
| ③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 ④ 당직 수당      |
| ⑤ 야간 당직일수         | ⑥ 휴일         |
| ⑦ 연차              | ⑧ 응급실 수련시간   |

# '21년 평가 개선사항

의료기관 제출자료

연구비  
지출 여부

- 손익계산서 상 연구비 5천만 원 이상 지출 시 인정

# '21년 신규 도입지표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증외상  
환자치료  
[시범지표]

- 도입취지

-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걱정 조치 제고를 통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 평가 방향

- ✓ 외상 중증도 지수(ICISS) 등을 활용, 입원 및 전원 등 걱정 조치 여부 평가

CHAPTER • 6

# 향후 평가 일정



# 평가 일정

## 평가자료 제출

- '20.6.22. ~ 7.13.

## 지표값 통보

- '20.8월 예정

## 정정신청

- 지표값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평가결과 통보

- '20.10월 예정

## 이의신청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수가적용

- '21.1.1.~'21.12.31.

※ 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